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표등록결정 시점 명확화〉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0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9.
3. 회부연월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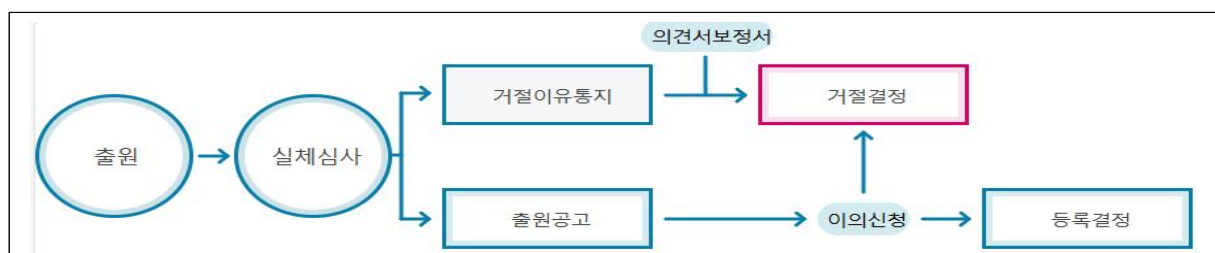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상표등록결정의 시점에 대하여 “상표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안 제68조).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u>상표등록출원</u> 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출원----- ----- ----- ----- -----.

현행 상표 등록제도에 따른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 상표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자료: 공익변리사센터_상표의 출원절차 (https://www.pcc.or.kr/home/content.do?menu_cd=000034)

여기서, ① **상표출원**¹⁾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이름, 로고, 문자, 도형, 색채, 입체형상, 소리, 냄새 등)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그 상표를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② **출원공고**²⁾는 출원된 상표가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30일간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이며, ③ **이의신청**³⁾은 상표출원이 공고되었을 때, 제3자가 그 상표가 법적으로 등록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고, ④ **상표등록**⁴⁾은 출원된 상표에 대해 특허청이 심사를 완료하고,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한 후 상표가 법적으로 등록상표(등록원부에 등록)로 인정하는 것으로,

-
- 1)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상표법**」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3) 「**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4) 「**상표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결정은 출원공고 및 이의제기 기간(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

그런데, 현행 「상표법」을 보면 상표출원공고결정(제57조제1항)과 상표등록결정(제68조제1항)의 요건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상표출원공고결정 시점과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표등록결정이 상표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끝낸 후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오해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허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